

#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3월 5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7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7년 3월 19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위생과장 김용수)

### □ 제안이유

- 각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구에 분임기금 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각각 두도록 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기금운용을 위하여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각각 두도록 함(안 제11조제3항 신설)

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기금사업중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?	○ 원미구는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제공사업, 소사구는 남은 음식물 싸주기 사업 포장용기 지원, 오정구는 모범음식점 영업주 대상 강좌 개최 사업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 : “원안의결”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6
의결 연월일	2007. 3. 22

제출년월일 : 2007. 3. 5

제출자 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각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각각 두도록 하여 식품 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기금운용을 위하여 구에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각각 두도록 함(안 제11조제3항 신설)

##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.

1. 분임기금운용관 : 구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
2. 분임기금출납원 : 구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.</u></p> <p>1. <u>분임기금운용관 : 구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</u></p> <p>2. <u>분임기금출납원 : 구 식품위생업무 담당팀장</u></p>